

■ 판례 동향

확정 전 가격신고로
발생한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 관련 판례

■ 품목분류 동향

원자시계 관련 제품의
품목분류

■ 개정법령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공급망 위기 시대 극복,
초격차 기술 선점,
전략적 국제 협력 중요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회원이 되시면 매주 배송료 부담 없이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고, CUSTRA 홈페이지(www.custra.com)를 통해서 주요 기사 및 법령 개정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60,000원(월 30,000원)
년 48회 발행
- 정기구독 신청 방법
 - CUSTRA 홈페이지 : www.custra.com
 -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 이메일 : know@kctdi.or.kr
 - 전화 : 02-3416-5112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96-01-0015-75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인 이찬기

편집인 김재현

총괄 권송미 vksm73@kctdi.or.kr

편집기획 이상혁 knight1229@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디자인 이승훈 lsh0910@kctdi.or.kr

마케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함동규 hdk0929@kctdi.or.kr

인쇄 경성문화사

배포 (주)아림디엠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4년 10월 7일(통권 제2101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가격 7,500원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공급망 위기 시대 극복, 초격차 기술
선점·전략적 국제 협력 중요

06 Weekly News

16 전문가 칼럼

가기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글로벌본부
글로벌소비재센터 수석연구원

관세행정실무해설

- 22** 관세행정안내
역내산 원재료만으로 이뤄진 상품에 대한
가공공정기준 충족 여부
- 29** 질의응답사례
식물성장조절제의 수입요건

판례동향

- 31** 관세판례해설
확정 전 가격신고로 발생한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 관련 판례

품목분류동향

- 43** 품목분류해설
원자시계 관련 제품의 품목분류
- 53** 세번 바로잡기
워딩
- 55** 상식 밖의 상품학
지구 온난화 주범으로 지목된 냉매 ‘프레온가스’

최신개정법령

- 58** 공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

공급망 위기 시대 극복, 초격차 기술 선점·전략적 국제 협력 중요

한은, “기술 간 융합 저해하는 규제 축소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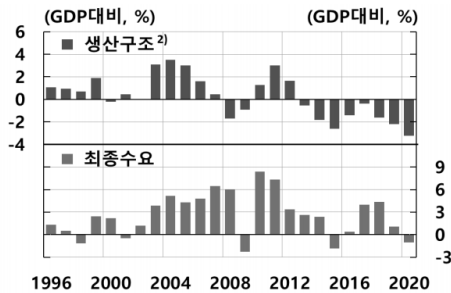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지정학적 블록화와 지역화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첨단제조업에서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한편 기술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는 축소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전망부 거시분석팀은 9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BOK이슈노트 : 글로벌 공급망 관점으로 본 우리경제 구조변화와 정책대응’ 보고서를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 증가세가 2010년대 들어 완만해졌다고 밝혔다. 한은 거시분석팀은 중국의 중간재 자립도가 오르고 중국에 있던 생산기지가 다른 나라로 이전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먼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이 과거에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자 전 세계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 받았지만, 최근에는 공급 측면의 리스크로 여겨지는 추세다. 2010년 이후 상품 교역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서비스 교역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교역의 형태도 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생산구조가 제조업에 치중돼 있으며 수출의존도가 높고, 서비스 수출은 잠재력이 높지만 성장세가 더딘 특징이 있다. 게다가 일부 신산업을 중심으로 원자재 수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공급망 변화에 노출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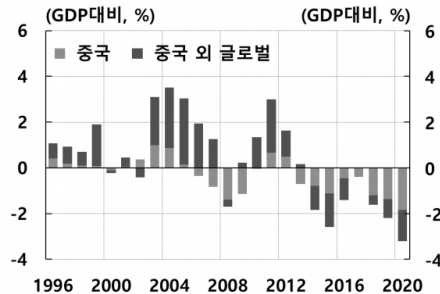
한은 거시분석팀은 우리나라 직·간접 수출에서 최종재를 제외한 ‘중간재 직·간접수출’을 글로벌 공급망과 연계된 생산, 즉 ‘수출연계생산’으로 정의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수출연계생산은 2000년대에 큰 폭으로 성장했지만, 2010년대 들어 증가세가 점차 완만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분석팀은 최종수요와 생산구조가 달라지면서 수출연계생산 증가폭도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산구조 변화에 따른 수출연계생산의 감소는 상당 부분 중국의 생산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중국의 중간재 자립도가 커지면서 중간재 수출이 줄었다는 의미다.

● 우리나라 수출연계생산 변동 요인별 분해 ●



주: 1) 수출연계생산의 전년대비 증감액을 전년도 총부가가치(GDP)로 환산
2) 3년 중심 이동평균
자료: OECD ICIO, 조사국

● 국가별 생산구조 요인 기여도 ●



주: 1) [그림11]의 생산구조 요인(■)을 ‘중국’ 및 ‘중국 외 글로벌’ 기여도로 추가 분해
자료: OECD ICIO, 조사국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생산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對중국 수출연계생산에서 철강·1차금속, 석유정제, 화학 등 분야 수출 제조업의 구조적 둔화세가 더욱 빠르고 두드러졌다.

주요 수출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내 위치를 보면, 반도체 등 IT 제조업 공급망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전방(upstream)에 위치하고 있다. 2020년 글로벌 IT 산업 부가가치에서 우리나라 비중은 8%로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컸다. 다만 2018년부터 IT 제조업 공급망에서 韓·中생산구조가 변화하고 있어 기술 우위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은 최근 10년간 수출연계생산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글로벌 공급망 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며 향후 이러한 위치가 위협받을 수 있다. 전기차 핵심부품 중 하나인 배터리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관련 광물 및 소재의 공급망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중간재 상품보다는 중간재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디지털 전환으로 중간재 서비스 교역 비중이 늘고 기술혁신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낮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연사들도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의 수출도 서비스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제언에 공감을 표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수는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 경제 안보와 효율성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급망 변화의 속도는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조사국 이아람 거시분석팀장은 “공급망 변화 속도는 지정학적 갈등 전개와 기후변화 대응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단기적으로 심화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적 협력 관계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팀장은 우리나라가 AI 칩 등 첨단제조업에서 중국의 기술력 도전을 받고 있어 ICT 인프라를 토대로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맞춤형 생산 및 정밀 제조기술 수요에 부응하고 전략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수입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비스 수출 확대 전략은 제조업 내재 서비스와 디지털 서비스 투트랙(two-track)으로 전개돼야 하며, 내수에 국한됐던 의료·교육 등 서비스를 디지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ESG 공급망 전환도 가속화해야 한다고 봤다.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비해 저탄소 기술 도입과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공급망 변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이 추진해야 할 과제도 공개됐다. 이 팀장은 “반도체 산업에서는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미국의 NSTC 등 국제 연구개발(R&D) 협력체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수”라며, “배터리·전기차 산업의 경우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 비축을 다방면으로 강화하는 한편, ESG 기준에 맞춰 수입국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기술 간 융합을 저해하는 업종별 구분에 근거한 규제는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성은 기자 |

9월 수출, 역대 1위 수출실적 달성 ... 일평균 수출은 사상 최대

수출 587.7억 달러, 수입 521.2억 달러로 66.6억 달러 흑자 기록

9월 수출이 역대 9월 중 1위 실적인 동시에 올해 최대 실적인 587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9월 일평균 수출도 사상 최대 실적인 29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일 올해 9월 수출이 전년 대비 7.5% 증가한 587억 7,000만 달러, 수입은 2.2% 증가한 521억 2,000만 달러로 66억 6,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9월 수출에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자동차, 선박, 바이오헬스의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136억 달러를 기록해 6월 이후 3개월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11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컴퓨터는 15억 달러로 9개월 연속, 무선통신기기는 19억 달러로 7개월 연속 증가했다.

2위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9% 증가한 55억 달러를 기록해 9월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한편 선박 수출은 76.2% 증가한 24억 달러를 기록, 증가율은 2개월 연속 50%를 초과했으며, 바이오헬스 수출도 9.9% 증가한 12억 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對중국 수출은 반도체·무선통신기기 수출이 증가하며 올해 가장 높은 실적인 117억 달러를 기록, 對中 무역수지도 7개월 만에 5억 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그밖에 對미국 수출은 역대 9월 중 최대치인 104억 달러, 對EU 60억 달러, 對ASEAN 95억 달러, 對CIS 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중동으로의 수출 또한 16억 달러를 기록하며 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한편 9월 수입은 521억 2,000만 달러로 2.2% 증가했으나 에너지 수입에서는 원유·가스 각각 11.6%, 0.6%씩 감소하며 10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9월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29억 8,000만 달러 증가한 66억 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6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3분기 수출 실적도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739억 달러를 기록해 139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4분기에도 수출 증가세가 시현될 수 있도록 도쿄 한류박람회(10. 11. ~ 13.), 수출붐업 코리아(10. 22. ~ 23.) 등 대규모 수출전시회를 통해 수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미국 동부 항만 파업 등 수출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하구현 기자 |

중소기업 K-뷰티 수출 2027년까지 100억 달러로 키운다

중기부, 'K-뷰티 100-UP 프로젝트'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 규모를 2027년까지 100억 달러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기부는 10월 1일 아마존, 한국콜마, 코스맥스, 올리브영, 신세계면세점 등과 협업해 K-뷰티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이다.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은 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8% 증가하며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對美 수출은 61.5% 증가하며 미국이 우리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 1위 국가로 등극했다.

중기부는 이러한 수출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더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7월 24일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K-뷰티 100-UP 프로젝트'를 운영하기로 했다.

프로젝트는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K-뷰티 슈퍼루키 워드 영', 'K-전략품목 어워즈', 총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우선 아마존, 코스맥스, 한국콜마와 함께 하는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는 미국 내 K-뷰티를 선도할 유망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수출 유망제품 트랙'과 '신제품 아이디어 트랙' 2가지로 구분된다. 수출 유망제품 트랙은 수출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화장품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며, 신제품 아이디어 트랙은 아마존이 제시하는 '미국 시장 진출 인사이트'를 참고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중 성공 가능성이 큰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다. 선정 기업에는 아마존의 마케팅 전략 교육·상담, 코스맥스·한국콜마의 제조 상담 지원과 함께 중기부 수출지원 사업 등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올리브영과 함께 진행하는 'K-슈퍼루키 워드 영'은 올리브영의 인프라를 활용해 수출에 도전·확대할 수 있는 수출 유망제품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올리브영은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 전략 컨설팅, ▲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올리브영 일부 매장 내 별도 판매공간 구성·입점, ▲올리브영 행사 등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행사 참여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신세계면세점과 같이 진행하는 'K-전략품목 어워즈'는 수출 증가 등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우수한 K-뷰티 중소기업을 선발·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세 가지 프로그램에 중복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선정될 경우 1개 프로그램만 선택해야 한다.

오영주 중기부장은 “화장품은 우리 중소기업 수출의 핵심 품목이자,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을 주도하는 품목”이라며, “100만 달러 수출을 올리는 기업이 화장품 수출 중소기업의 10%에 불과하지만, 전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의 85%를 차지한다. 우수한 수출 인프라를 가진 민간과 협력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정부, 중동 정세 악화에도 現 에너지·무역·공급망 영향은 제한적

산업부, 위기 상황 신속 대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일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개최한 산업 영향 점검 회의에 이어 10월 4일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수출·입,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라 석유 가격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격 당일인 10월 1일 국제유가(브렌트)는 전일 대비 2.6% 상승한 \$73.5/B를, 10.2일에는 0.5% 상승한 \$73.9/B를 기록했다. 이후 유가의 상승세 지속 여부는 이스라엘 등 주요국의 대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 가격은 세계 주요국이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동 정세가 석유·가스 수급, 수출,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라엘에 인접한 홍해를 통과하는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대부분 우회항로를 확보해 석유·가스 국내 도입에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

수출의 경우에도 對중동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2024년 1~9월) 수준이며 우리 물품의 선적 인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일부 석유화학제품의 경우도 다른 나라로부터 대체 수입이 가능해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확전 또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 등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산업부는 올해 4월 중동사태 발발 이후 설치한 종합상황실 및 에너지, 무역, 공급망 등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통해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일 점검 체계를 즉시 가동해 실시간 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중동의 상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도 10월 2일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따른 중동 사태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중동 사태의 국내영향 및 대응 방향의 구체적 후속 조치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재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후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과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으로 금융·실물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이 우리 경제 기초(펀더멘탈)와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준비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할 것임을 강조했다. | 하구현 기자 |

美,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최종판정 韓 기업에 최대 3.13% 부과

미국 상무부가 9월 27일(현지시간) 한국産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9월 초 예비판정에서 일부 한국 기업에 산정됐던 덤핑마진에 비해 다소 인상됐으나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산정돼 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 한국 기업인 알멕은 덤핑마진이 0%로 산정돼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신양 및 여타 기업에 대해서는 3.13%의 덤핑마진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당초 미국 내 제조자가 주장한 덤핑마진인 66.4%가 적용될 경우 알루미늄 압출재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에도 동일한 관세가 적용돼 한국의 자동차 업체의 對美 수출 관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보다 훨씬 낮은 마진율이 부과됨에 따라 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덜게 됐다.

美 상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對美 수출은 983만 9,000톤으로 6,800만 달러였다.

주요국 덤핑마진으로 중국은 최대 376.85%, 멕시코 82.03%, 콜롬비아 39.54%, 베트남 41.84% 등으로 판정됐다.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적용 여부는 오는 11월 12일경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미국 산업피해 여부에 대한 판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美 동부 항만노조 파업 긴급 상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일(현지시간) 美 동부 항만노조가 파업을 시작함에 따라 수출비상 대책반 회의를 10월 2일 열고 파업에 따른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애로사항,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현재까지 북미지역 수출 물품의 선적과 인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 아직까지 파업으로 인한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배터리, 자동차 등 북미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공장 건립 및 생산 활동도 충분한 재고여력 등을 바탕으로 영향이 제한적인 수준으로 파악됐다.

특히 美 동부지역으로 수출하는 우리 수출기업 등은 이번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그동안 동부 지역 向 일부 수출물품의 조기 선적, 동부에서 서안지역으로 항로 전환을 추진해 왔다.

산업부는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美 서부, 멕시코 등 대체 기항지 소재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확대 및 현지 대체 물류사 연결, 필요 시 美 서부 노선 중소기업 전용 선복 확대, 대금결제 지연 등에 따른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등의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 하구현 기자 |

韓·슬로바키아 통상·산업·에너지 포괄적 협력 확대 기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30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데니스 사코바 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이 서울에서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TIPF는 산업 공급망, 민간협력 촉진을 아우르는 협력 채널로 산업부는 이 채널을 활용해 양국 간 무역·투자 증진뿐만 아니라 산업, 에너지,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간 공동프로젝트 개발, 무역장벽 제거, 업계·기관 간 교류 확대 등 포괄적 산업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슬로바키아는 한국의 유럽연합(EU) 내 10대 교역국으로 우리 기업 140여 개사가 진출해 양국 간 자동차, 가전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협력 분야도 전기차·청정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요한 협력국이다.

韓·슬로바키아 TIPF는 우리가 체결한 26번째 TIPF로 유럽의 제조업 거점인 비셰그라드 4국(V4)과 TIPF를 모두 체결해 V4 국가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V4 국가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4개국 협의체로 1991년 2월 헝가리 비셰그라드에서 창설됐으며, 이들 국가와 한국 간 TIPF는 헝가리(2023년 4월), 폴란드(2023년 7월), 체코·슬로바키아(2024년 9월) 순으로 체결됐다.

한국의 對·V4 교역 규모는 2004년에서 2023년까지 연평균 15% 증가해 작년에는 약 261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협력 분야도 자동차, 가전 등에서 전기차 배터리, 원전,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완성된 韓·V4 TIPF 채널은 V4 국가와 경제협력의 외연을 한층 더 확대하는 데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韓·中 통상장관회의, 한·중 FTA 후속협상 및 안정적 공급망 논의

韓·中 통상장관회의가 9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올해 5월 26일 韓·日·中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창 총리와의 회담 시 논의된 한·중 FTA 후속협상 진전, 안정적 공급망 관리, 투자협력위 개재 등에 대한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연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공식협상을 개최하고, 서울에서 제6차 FTA 공동위를 장관급으로 개최해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상무부 간 既 구축된 소통채널(공급망 핫라인, 수출통제 대화체) 가동 등 韓·中 간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양국 투자기업들에 대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베이징에서 제8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한·중·일 FTA 등 다자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양·다자 협력에 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 하구현 기자 |

10월부터 HACCP 인증 업소 배추김치만 수입 가능

10월 1일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 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만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적용 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9월 30일 전했다. 그간 식약처는 수입 김치를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HACCP 제도를 도입해왔다.

식약처는 지난 2021년부터 HACCP 인증을 신청한 배추김치 해외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으며, 2024년 9월 기준 총 54개소(중국 53, 베트남 1)를 수입식품 HACCP 적용 업소로 인증했다. 작년 54개소의 배추김치 수입량은 24만 9,000톤으로 총수입량 27만 4,000톤의 약 91%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올해 말에는 HACCP 적용 업소의 수입량이 약 97%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외 제조업소 HACCP 인증 평가 및 조사·평가는 배추김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하고 있다.

아울러 HACCP 인증 이후에도 안전 관리를 위해 인증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조사·평가를 실시하며, 유효기간(3년) 도래 시 유효기간 연장여부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HACCP 인증 및 유지관리 적정성 점검과 더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바르샤바 사무소 개소 … 중·동부 유럽 수출지원

폴란드 바르샤바에 한국무역협회 사무소가 9월 26일 문을 열었다. 브뤼셀에 이은 무역협회의 유럽 내 두 번째 해외 사무소로 우리 기업의 중·동부 유럽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동·서유럽을 잇는 경제·물류 허브인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EU 내 2위 수출 상대국이다. 수교 이후 양국은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방위산업,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등 협력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바르샤바 사무소는 EU 통상 이슈 대응 거점인 브뤼셀지부에 이어 ▲중·동부 유럽 시장정보 제공, ▲현지 마케팅 지원, ▲진출기업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애로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9월 26일 폴란드 바르샤바 프레지덴셜 호텔에서 열린 바르샤바 사무소 개소식에서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작년 한국과 폴란드 간 교역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390여 개의 한국 기업이 폴란드에 진출해 현지에서 3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양국의 경제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번에 신규 개소한 바르샤바 사무소를 통해 배터리·방산·원전 등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는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라오스와 농업협력 MOU 개정 “종자·스마트농업 등 협력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라오스 농림부의 린캄 드영사완 장관과 9월 30일 韓·ASEAN 다자 협력과 韓·라오스 간 양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은 ‘농업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라오스는 올해 ASEAN 의장국으로 ‘연계성과 회복력 강화’를 주제로 역내 협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韓·ASEAN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으로 관계가 크게 진전될 예정이라고 농식품부는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 드영사완 장관은 韓·ASEAN 농업 협력의 핵심은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5개국을 관통하는 메콩지역임을 언급하면서 “라오스는 많은 노동가능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업 부문 개발이 중요하다”며 한국 농식품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송 농식품부 장관은 “한국 농식품부는 그동안 관개시설 확충, 재배기술 전수 등 여러 공격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라오스의 농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했다”며, “이번 MOU 개정을 통해 종자와 스마트농업 등 양국이 희망하는 협력 범위가 확대됐다. 앞으로 더 많은 협력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올해 ‘ASEAN+3 비상 쌀 비축제’ 지원 물량을 작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며, 역내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등 ASEAN과의 다자협력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식약처, 베트남産 수입 당절임 ‘검사명령’ 시행

베트남 7개 업체가 제조한 건망고, 건파파야 등 ‘당절임’ 제품의 경우 수입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의 7개 제조업체에서 수입되는 당절임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당절임은 주원료를 꿀, 설탕 등 당류에 절이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추가해 가공한 것으로 건망고, 건파파야, 건파인애플, 편강 등이 대표적이다.

검사명령을 받은 베트남의 7개 업소는 ▲BRANCH OF ATL GLOBAL COMPANY LIMITED, ▲C&C INTERNATIONAL FOOD JOINT STOCK COMPANY, ▲SUNRISE INS LTD, ▲HOANG TUAN KHOA SERVICES TRADING AND MANUFACTURECOMPANY LIMITED, ▲ONE FOOD VIET NAM COMPANY LIMITED, ▲CONG TY TNHH SAO KHUE SG, ▲LE TRUNG THIEN CO., LTD 등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해당 해외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당절임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타르색소’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 김성은 기자 |

대한상의, 1만 8,000여 EU 진출 기업 위한 '공급망 실사 지침 가이드북' 발간

최근 발효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과 관련 1만 8,000여 개 EU 진출 기업을 위한 인권·환경 실사 체크리스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EY한영과 공동으로 'EU 수출기업을 위한 공급망 실사 지침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0월 3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국내 EU 수출기업이 기업현장에서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응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급망 실사 지침의 의미와 추진 경과, 적용 시점, ESG 실무자를 위한 단계별 이행 가이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등의 종합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시행되면 1만 8,786개 EU 진출 기업들과 협력사들, EU기업들과 사업관계에 있는 국내기업들이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돼 가이드북 발간이 기업들의 구체적인 대응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상의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원청기업이 협력사의 인권·환경수준을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3년 후인 2027년부터 국내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이 EU 진출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실사 지침 대응을 지원하는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대한상의 홈페이지 ESG 플랫폼(esg.korcham.net)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K-푸드 '수출 복병' 위조상품 이렇게 대응하세요

특허청은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위조상품 유통 대응을 위해 식품업종 기업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K-Food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 가이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특허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상품 유통은 2021년 기준 약 11조 원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기업에 특화된 이번 가이드에는 ▲식품업종 분쟁 통계 및 현황, ▲식품기업이 겪는 위조상품 유통·상표무단선점 사례 및 대응 전략, ▲식품기업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기초 정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 보호 지원사업 소개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 식품기업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았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업종별로 분쟁상황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최초로 발간했다”며 “향후 위조상품 피해가 빈발한 업종인 패션, 화장품 등으로 가이드 발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이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www.koipa.re.kr), IP-NAVI(www.ip-navi.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하구현 기자 |

농식품부, 망고 등 베트남産 생과채류 불법 반입 적발

수입식물 보세창고 검역 과정에서 총 69kg 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는 수입식물 보세창고에서 불법 반입된 베트남産 생과채류를 적발했다. 적발된 생과채류는 총 69kg으로 암바렐라 28kg, 망고 18kg, 달래 23kg이 포함됐다.

10월 4일 검역본부 발표에 따르면, 생과일 유통 성수기를 맞이해 검역본부에서는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생과실류 특별검역기간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에 앞서, 중부지역본부는 인천항 내 부두·항만, 보세창고 등 반입 우려 경로에 대해 사전점검을 하던 중 이번 불법 반입을 적발했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암바렐라는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며, 망고는 생산국에서 우리나라 수입 요건에 맞는 소독 이행, 병해충 유무 확인 등 수출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품목이다.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외국 생과실이 국내 밀반입될 경우, 국내 과수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과수화상병과 같이 과육 내 생육할 수 있는 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업 및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

● 적발된 생과일 화물 전체 및 적발된 품목 ●



출처 : 중부지역본부

최봉순 중부지역본부장은 “외국에서 생과실 등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에 검역 대상 물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다 적발된 자는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식약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교육 실시

내년 1월 24일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올해 11월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허가·심사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자료 등을 안내하는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교육’을 실시한다.

10월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및 기술문서 심사기관에 의료기기 허가·심사 때 제출하는 사이버보안 자료 변경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자리다. 교육은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관련 국내 제도 현황, ▲사이버보안 적용 범위, ▲사이버보안 자료 요구사항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의료기기 제품 개발 단계부터 허가·심사까지 사이버보안 관련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 및 관련 기관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시장개척단 파견 … “동물용의약품 신시장 개척”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2024 VIV 아프리카 박람회’에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제조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아프리카 신시장 개척에 나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등 동부아프리카 지역은 중국, 인도 등의 저가 제품으로 가격 및 품질 경쟁이 치열하나, 축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동물용의약품, 백신 등의 수요가 많아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시장개척단은 우리나라의 동물용의약품을 소개하고 바이어 미팅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으며, 현지 수입업체 및 농장을 방문하는 한편, 르완다 식약청(RFDA) 및 축산 관련 단체 간담회를 진행해 동물용의약품 시장 현황 및 트렌드를 파악했다.

정부는 아프리카 동물용의약품 시장 동향 파악에 주력해 동남아시아에 편중된 수출시장에서 벗어나 아프리카에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신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인사]

■ 과장급 전보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 광 선**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 성 근**
관세청 전 성 배

■ 과장급 전보

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윤 남 희**

<2024년 10월 6일자>

<2024년 10월 7일자>

인니, 10월 17일 할랄인증 의무화 … 무엇이 달라지나?



가 기 경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글로벌본부 글로벌소비재센터 수석연구원

최근 몇 년 새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뉴스나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진출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사실 인도네시아라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거리도 멀지만, 그동안 민간 부문에서 교역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소 낯선 국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최근 인도네시아 시장의 중요성과 관련한 뉴스들이 많이 보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래시장으로서의 인도네시아

1. 한국·인도네시아 경제 교류 확대

다음의 최근 5개년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출 동향을 보면 對인도네시아 수출이 202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인도네시아 수출 동향 ●

(단위 : 금액 100만 달러, 증감률 %)

품목	항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7월)
전체	수출액	163,301	228,227	291,973	258,906	147,324
	증감률	-2.5	39.8	27.9	-11.3	-1.5
화장품	수출액	60	67	55	76	73
	증감률	-0.8	12.5	-17.3	37.5	83.8
식품	수출액	133	193	230	220	130
	증감률	-4.2	45.3	19.3	-4.4	4.0

자료 : K-stat 무역통계,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 농식품수출정보 사이트

이는 1) 2022년 11월, 2023년 9월 대통령 순방 등 한국·인도네시아 간 국가 교류 증대, 2) K-방산 협력, 한국 세종시를 롤모델로 한 수도이전 대규모 프로젝트 기반 건설 수주 등 한국기업 진출, 3)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OTT를 중심으로 한 K-컬처의 전파, 4) 이에 영향을 받은 소비재(화장품, 식품) 수출 증대 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2. 수출국 다변화 대안 시장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2023년 기준 인구수 2억 7,700만 여 명, GDP(국내총생산) 1조 4,200만 달러의 탄탄한 경제성장 기반을 보유한 국가다. 아직은 중진국 수준이지만, 2023년 경제성장률 5.0%로 한국과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발전이 지속되는 미래 시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및 기술 패권 분쟁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GVC(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요성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 2045년까지 세계 5대 경제·1인당 국민소득 2만 5,000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국가전략프로젝트 (PSN)’ 추진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미래의 주요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언급한 미래시장으로서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대감과 기회, 최근 민간 부문까지 확대된 국가 간 교류 등을 바탕으로 기존 소수국가에 집중돼 있던 우리 기업의 수출국 확장을 위한 대안시장으로 인도네시아와 활발한 경제 교류 및 우리 기업의 시장 진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검토 요소 : 할랄(HALAL)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 요소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문화권’ 국가라는 점이다. 전체 인구의 88%가 이슬람교도인 인도네시아는 정부 부처에 종교부를 뒀 ‘이슬람교의 국교화’를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교 국교화’의 주요 정책으로 2017년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을 설립해 인도네시아 내 유통 및 수입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할랄(HALAL)’ 여부를 확인해 비할랄 제품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10월 17일부터 수입·유통되는 가공식품, 2026년 10월부터는 화장품에 할랄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제도 변화 ●

시 기	주요 사항
1989년	인도네시아 울라마협의회(MUI) LPPOM-MUI 설립 및 할랄인증 시행 * 배경 : 1988년 젤라틴, 식품 및 음료에서 돼지 파생 제품 발견
2014 ~ 2016년	2014년 제33호 법률, 2025년 제83호 대통령 법령, '16년 제 42호 종교부 장관 법령 공포 → 할랄 청 설립 법적근거 마련
2017년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설립
2019년	‘할랄제품 보증의 실현에 대한 제31호 정부 법령’, ‘제26호 할랄종교부 법령’ 공포 → 할랄인증 관련 모든 업무를 할랄청에서 수행

1.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증(HPA, Halal Product Assurance)법

이 법은 2019년 10월 17일 처음 발효됐다. 이후 2021년 2월 인도네시아정부는 식품 및 음료(2024년 10월), 의약품, 화장품(2026년 10월) 등의 제품 중 할랄 제품에 대해 순차적으로 '할랄인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최근 기업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랄인증 의무화'라는 단어를 할랄인증이 없으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할랄인증 의무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할랄 제품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유통할 경우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인증을 획득해 할랄 인증마크를 표기해 유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할랄 제품의 경우, 2014년 제33호 법률 제92조에 의거 비할랄성에 관한 정보를 표기해 소비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비강제성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할랄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할랄인증 의무화'의 계기가 된 1988년 돼지 유래성분이 식품에 함유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대규모 불매운동과 시위가 일어난 사건처럼 인도네시아 인구 88%의 이슬람교도에게는 본인이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제품이 종교에 위배된다면,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할랄과 비할랄 제품의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수입, 보관, 유통, 전시 및 판매 등 여러 방면에서 분리해 관리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 사항이므로, 당연히 전 과정에서 할랄인증 제품에 우선권이 부여될 것이다.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기업에는 수출 및 판매, 유통의 전 과정에서 추가 비용 발생 및 상대적인 제품 경쟁력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는 할랄인증을 보유한다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중동, 중앙아시아, 말레이시아, 심지어 중국에 존재하는 1억 5,000만 여 명의 이슬람 인구를 포함한 전 세계 20억 여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할랄(HALAL)인증의 개념 및 절차

'할랄(HALAL)'이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허용된 것'을 의미한다. 반대의 단어는 '하람(HARAM)'으로 '금지된 것'을 의미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알라(신)에게 벌을 받는다고 믿는다.

'할랄인증'이란 할랄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 샤리아에 따라 모든 절차(원료, 생산, 유통, 판매 등)가 관리됐다고 검증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할랄인증은 1) 사전 검토 → 2) 시험 및 인증 신청 → 3) 서류심사 → 4) 현장심사 → 5) 샤리아위원회 최종 심의 → 6) 인증 발급의 절차로 이뤄진다. 각 단계별 중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할랄인증 획득 절차 ●

1) 사전 검토	3) 서류심사
할랄인증에 대한 이해 주요 심사 항목별 자사 현황 검토 → 진행 여부 확정 - 제품 : 성분 및 원료, 포장재, 국가 법정 관리체계 준수 등 - 생산 : 제조공장(교차오염 여부), 위생관리 - 할랄경영시스템 : 경영건전성, 할랄관리 체계 및 담당자 품목별 할랄인증 시험항목	구비서류 제출 완료 여부, 각 항목별 할랄 표준 부합 여부 - 경영의 건전성, 할랄 관리 체계 부합성 - 원료 및 완제품의 국가 표준 및 할랄표준 부합성 - 생산시설의 할랄 제품 생산 적합성
	4) 현장심사
	생산설비의 할랄기준 부합 확인, 관리체계, 교차 오염 방지 - 심사원 : 종교적 지위 高 → 교통비, 심사기간 체류 시 이슬람 문화 준수, 통역 등 비용 高
2) 시험 및 신청	5) 샤리아위원회 최종 심의
시험 → 지정시험소에서 시험(교차오염 방지) ISO 17025 - 할랄 : 에탄올 잔류량, 돼지유전자검사(PCR), 투수성(화장품) - 기타 : 법적구비사항, 포장재 및 수질검사, 원료성적서(필요 시) 구비서류 - 기본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품목등록/허가서, 제품 사진 및 표시사항, 경영검토보고서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 - 원재료 : 성분표, 할랄인증서 혹은 기준 시험성적서(동/식물) - 생산 : 생산허가서 등, ISO/GMP 등, 제조공정도, 방충/방서/세척기록 및 사용 약품 MSDS, 제조공정도 할랄체계 : 할랄 교육 수료증, 할랄관리기준서 및 할랄방침	적합 시 파트와(FATWA) 판결문 채택 및 송부 샤리아위원회 : 무슬림으로서 이슬람 법 전문가로 구성 - 하나피, 샤피, 말리키, 한발리라는 4개 법학파로 나뉘어짐
	6) 인증 발급(유효기간 3~4년)

1) 사전 검토 : 샤리아법에 맞춘 원료 사용, 생산시설 등의 교차오염 방지와 같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업이 변경 혹은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평가해 인증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성분검토의 예를 들면, 화학 성분이나 광물성 성분의 경우 인체에 무해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식물성 성분은 추출물 사용 시 용매에 에탄올을 사용한 경우 반드시 에탄올 잔류량을 확인해야 한다. 수산물의 경우 대부분 허용되나 독성 유무 등이 이슬람교 내 종파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획득하려는 할랄인증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동물성 원료 및 성분을 사용했을 경우다. 돼지 및 개에서 유래된 성분은 ‘금지 성분(하람)’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부분은 대부분 알고 있다. 하지만 소, 닭, 양에서 유래된 원료의 경우도 각 동물에 따른 도축법을 샤리아에 정하고 있으므로 샤리아 도축법을 따르지 않았다면 소, 닭, 양에서 유래된 성분이어도 할랄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추가로 각 원료의 할랄인증을 제출해야 하니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2) 시험 및 인증 신청 : 기본적으로 해당 제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제품 인허가 및 인증이 완료된 제품이어야 할랄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할랄 제품임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에탄올 잔류량 시험과 돼지 유전자 검사를 통해 허용 함량 이내 포함 및 금지성분 불검출의 결과를 받아야 한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추가로 ‘우두(wudu, 예배를 드리기 전 시행하는 간단한 세정식)’라는 의식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투수성(water permeability, 물이 투과되는 것) 시험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3) 서류심사 : 앞서 이야기한 원료 및 성분, 할랄 표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 이외에도 할랄인증은 타 인증과는 다르게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① 경영의 건전성 : 경영검토 보고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② 할랄체계 준수 : 할랄 교육 수료증, 할랄관리기준서 및 할랄방침(HAS)

4) 현장심사 : 서류심사까지 마치면 서류상 내용과 실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산시설의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현장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은 하람 요소와 교차오염이 발생하는지 여부다. 따라서 원료의 입고 및 보관(물류차량 포함), 생산시설의 독립성 및 비할랄 제품 생산 여부, 완제품의 보관 및 출고까지 전 과정을 점검한다.

필자가 현장심사를 참관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기업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느꼈다. 첫째는 현실적으로 할랄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 기업은 외주생산을 하거나 자가생산을 하더라도 한 라인에서 할랄, 비할랄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완전히 독립돼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할랄 생산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할랄 라인을 신설하거나, 할랄인증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제약은 추가적인 투자나 원가상승을 가져오는 부분으로 반드시 사전검토 단계에서 기업의 판단이 필요하다.

둘째는 할랄심사원이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면서 샤리아에 의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종교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할랄심사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할랄심사원의 심사 및 체류 시 할랄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해외 할랄인증을 받으려 할 경우 언어적인 어려움도 사전에 문제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5) 샤리아위원회 최종 심의 및 6) 인증서 발급 :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샤리아위원회를 통해 적합성 여부를 평가받게 되며, 적합할 경우 파트와(FATWA) 판결문을 채택해 최종 할랄 인증서를 받게 된다.

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한 우리 기업의 할랄인증 대응 방안

앞서 우리는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의 필요성,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의 개념, 할랄인증 절차 및 기준에 대해 살펴봤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시 ‘할랄인증 의무화’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업의 전략적인 대응이 있다면 이러한 애로사항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본다.

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한 ‘할랄인증 의무화’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상호인정(MRA)을 활용한 단계적 할랄인증 획득

우리나라에서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대비해 국내 할랄인증기관((사)한국할랄산업진흥원·KMF, 한국할랄인증원·KHA)을 지원해 2023년 11월 인도네시아 할랄청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었다.

이에 우리나라 할랄인증인 KMF와 KHA의 할랄인증을 획득할 경우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에서 제공하는 외국할랄인증등록(RSHLN) 플랫폼을 통해 수출 전 등록을 실시하면 인도네시아 할랄청의 할랄인증 추가 획득을 하지 않아도 할랄 제품으로 인정받고 수출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을 처음부터 취득하려면 이보다 약 4배의 비용과 2배의 소요시간이 필요하다.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국내 할랄인증 획득을 통해 초기 시장진입 및 개척을 실시하고, 추후 할랄 제품의 수출액이 증가할 경우 인도네시아 및 기타 이슬람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척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해외 주요 할랄인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을 추천한다.

2. 정부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활용

할랄인증 취득 및 실제 진행을 위해 기업이 가장 도움을 원하는 부분은 1) 할랄인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2) 할랄인증 취득 비용 지원, 3)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컨설팅 기관 확보, 이 세 가지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상호인정을 통한 인증 애로사항 해소와 함께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의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할랄인증 획득 어려움을 청취해 2024년 지원사업의 패스트트랙에 할랄인증 지원을 포함했다. 사업신청 및 선정 시 기업이 신뢰성 있는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비용 지원을 받아 할랄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외수출규제 전담대응반’을 통해 할랄인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정보 획득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다.

최근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나라 수출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자주 접하고 있다. 본 기고가 우리 기업의 미래시장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할랄인증 의무화’ 대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역내산 원재료만으로 이뤄진 상품에 대한 가공공정기준 충족 여부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제목	역내산 원재료만으로 이뤄진 상품에 대한 가공공정기준 충족 여부
협정명	-
질문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이고 완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가공공정인 경우,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임에도 불구하고 가공공정기준을 충족해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원산지 재료만 사용해 생산된 물품의 경우, 개별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요구하는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FTA 협정문과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2. FTA 원산지결정기준

(1) 개요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 있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는 의미로서의 FTA 적용 요건은 크게 1. 거래당사자 요건, 2. 품목 요건, 3. 원산지상품 요건, 4. 절차 요건, 5. 운송 요건이 존재하지만, 실무상 좁은 의미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은 ‘3. 원산지상품 요건(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원산지상품 요건은 해당 물품이 각 협정상 존재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FTA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원재료 정보, 제조공정 정보 그리고 필요한 경우 완제품 및 원재료의 가격 정보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정보는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의 서류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 원산지 결정기준의 종류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WO, Wholly Obtained or produced), 원산지재료 생산품(PE, Produced Entirely),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특정공정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가공공정기준(특정공정기준)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종류	내용
완전생산기준	비원산지 재료 사용 없이 오직 당사국의 원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완전 생산을 수행한 국가로 정하는 기준
원산지재료 생산품	협정에서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부여받은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국 내에서 생산된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
세번변경기준	사용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HS Code와 다른 HS Code의 완제품이 생산된 경우 제조·가공이 이뤄진 것으로 봐 그 변경이 이뤄진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
부가가치기준	우리나라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계산식에 따라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음)인 경우 원산지를 그 부가가치를 발생시킨 국가로 하는 기준
가공공정기준	협정에서 정한 특별한 가공공정을 수행한 경우 해당 가공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하는 기준

완전생산기준, 원산지재료 생산품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제3장의 원산지상품의 규정에 포함되고,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또한 제3장의 원산지상품의 규정에 포함되지만, 품목별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지는 부속서로 따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RCEP에서는 원산지 상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RCEP 제3장 원산지 규정

제3.2조(원산지 상품)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 가. 제3.3조(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규정된 대로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나.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 또는
 - 다.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 다만, 그 상품은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

제3.2조의 가목은 완전생산기준, 나목은 원산지재료 생산품을 말한다. 그리고 다목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을 말하는데, 해당 규정은 품목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부속서 3-가를 통해 판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완전생산기준과 원산지재료 생산품 관련 규정은 모든 물품(HS Code)에 적용 가능하다. 다만, PSR의 경우 각 HS Code별로 정해진 기준대로만 적용이 이뤄진다.

이에 관해 RCEP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두주에서는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2조(원산지 상품)의 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대로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와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의 원산지 기준은 모든 세번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을 확대해 보면 원산지 결정기준은 협정별로 그리고 품목(HS Code)별로 상이하며 각 원산지 결정기준은 선택적으로 적용되거나 조합해 적용된다.

협정	HS Code	원산지 결정기준
한·ASEAN 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한·인도 CEPA	제3926.90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한·EU FTA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HS Code 제3926.9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된다. 동일한 물품을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상이하다.

한·ASEAN FTA의 경우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 ② 부가가치기준(RVC 40%)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이 될 수 있다(선택기준). 그에 반해 한·인도 CEPA는 ①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과 ② 부가가치기준(RVC 35%)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얻을 수 있으며(조합기준), 한·EU FTA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기준(MC 50%)을 통해서만 원산지판정이 가능(단일기준)하다.

(3) 가공공정기준

가공공정기준은 해당 물품(HS Code)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정한 특정 제조·가공을 역내에서 수행한 경우 해당 가공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가공공정기준은 특정 협정에서 특정 산업군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바로 석유산업, 화학공업산업, 섬유산업이 바로 그것이다.

중소기업 실무에서는 섬유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명하게는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원사기준(Yarn-Forward)이 있다. 즉, 실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규정으로만 따지면 세번변경기준의 체계를 따르지만, 세번변경기

준 자체가 가공공정기준의 일종이라는 측면에서는 원사기준을 가공공정기준으로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최근 들어 가장 이슈가 됐던 가공공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한·ASEAN FTA에 존재하는 재단 및 봉제에 관한 사항이다. 한·ASEAN FTA 및 한·베트남 FTA[한·베트남 FTA는 개정돼 삭제(2022. 8. 1)]에서는 양말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CC and SP(재단 및 봉제) or RVC 40%로 규정이 있다. 문제는 SP인데, 해당 결정기준이 적용되는 의류 등은 재단 및 봉제 방법으로 가공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편성 공정 자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인데, 재단(Cutting) 및 봉제(Sewing)는 일정한 폭과 너비의 직물을 형상에 따라 자르고 이를 코바늘, 접착제 또는 재봉사를 이용한 봉제 등의 방식으로 연결해 제조하는 것을 말하고, 편성(Knit-to-Shape)은 양말이나 장갑처럼 별도의 추가적인 재단·봉제 없이 편직을 통해 그대로 최종 제품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여러 조세심판 사례로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조심 2020관0191(2022. 1. 11.)에서는 쟁점물품이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쟁점물품은 재단 및 봉제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베트남 FTA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은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규정(한·베트남 FTA PSR 개정 전이다)하고 있고 ‘편성 공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유권해석에서 FTA 협상 시 ‘재단 및 봉제’를 ‘편성’과 별도의 공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편성 공정을 협정 반영 시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한·베트남 FTA 의류의 원산지 기준도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즉 가공공정기준의 적용에 관해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의도하는 공정이 실제로 해당 물품의 생산에 적용됐는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해당 원산지 기준에 존재하는 가공공정기준이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원산지 재료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질문 & 답변 사례에 대한 해석

(1) 질문의 요지

질문 & 답변 사례는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이고 완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가공공정인 경우,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인데도 불구하고 가공공정기준을 충족해야 원산지

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다. 일단 해당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상품이 되기 위한 3가지 방법(완전생산기준, 원산지재료 생산품, 품목별 원산지기준)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 확인해야 한다.

(2) 원산지재료 생산품

일단 원산지가 모두 역내산인 경우 협정상 PSR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사례는 완전생산기준 또는 원산지재료 생산품(PE, WP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투입되는 원재료가 모두 원산지 재료이기 때문이다. WO와 PE의 차이가 극명히 드러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산만 가지고 생산했다면 이는 WO가 될 것이다. 그런데 PE의 경우 소요되는 원재료 모두를 ‘원산지 재료’로 사용하면 PE를 충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완제품 정보 ●

대상 물품	화장품(스킨케어 코스메틱)
HS Code	제3304.99호
적용 협정	RCEP

● 원재료 정보 ●

NO	재료명	HS Code	RCEP상 원산지	충족한 원산지기준
1	물(수돗물)	제2201.90호	한국	WO
2	부틸렌글리콜	제2905.39호	중국	PSR
3	글리세린	제1520.00호	태국	PSR
4	홍삼 추출물	제1302.19호	한국	WO
5	페녹시에탄올	제2909.49호	일본	PSR

예시에서 원재료는 5가지로 그 중 원산지가 한국산인 원재료는 1. 물과 4. 홍삼 추출물이다. 그리고 2, 3, 5는 각각 중국, 태국, 일본산 물품으로 RCEP상 PSR을 충족한 물품이다. 중국, 태국, 일본은 모두 RCEP 적용 국가이고, PE는 하나 이상의 당사자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를 뜻하기 때문에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PSR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PE는 하나 이상의 당사자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를 뜻한다. 여기서 생산이란 재배, 채굴, 수확, 농작,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양식, 덧사냥,

수립, 제조, 생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 획득의 방법을 말하며, PE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생산 관련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3) PSR 적용 품목

PSR은 각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말하며 RCEP이나 한·EU FTA, 한·미 FTA 등에서는 PSR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협정	규정
RCEP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 다만, 그 상품은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EU FTA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자 내에서 획득된 제품. 다만, 그러한 재료는 제5조의 의미상 해당 당사자 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한·미 FTA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2) 상품이 부속서 4-가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PSR은 비원산지 재료를 토대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각 규정에서는 ‘비원산지 재료’를 토대로 물품이 생산된 경우 PSR이 적용됨을 규정한다. 한·EU FTA에서는 관련 규정이 본문에는 없으나, 부속서 2(PSR) 자체의 목록명이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목록”이라고 규정돼 있고,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가공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PSR 자체가 비원산지 재료에 적용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PSR에 해당되는 가공공정기준은 WO, PE 적용상 원산지 재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다. 관세청에서도 원산지 재료만 사용해 생산된 물품의 경우, 개별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요구하는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정리하면 PSR에서는 특정 물품에 대한 가공공정기준이 존재한다. 그러나 원산지 재료로만 물품이 생산되는 경우 PSR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WO 또는 PE(WP)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PSR에 규정돼 있는 가공공정기준을 따로 적용하지 않아도 원산지 물품(상품)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 중 WO, PE에 대한 규정에서 특정 공정이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WO, PE를 규정하는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PSR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가공공정에 관한 규정을 충족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WO 적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PE가 FTA 규정상 존재하지 않는 협정에서는 해석상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ASEAN FTA의 경우 원산지 상품 요건에서 원산지 재료 생산품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한·ASEAN FTA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2조(원산지 기준)

1.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그것이 다음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며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가. 제3조에 규정되고 정의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전부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나. 그 상품이 제4조,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원산지 자격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
2. 제7조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 획득을 위한 조건은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3조에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에는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배된 후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또는 식물 상품 등을 적용하며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등과 같은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원산지 재료 생산품은 한·ASEAN FTA상 WO를 적용하지 않고 ‘CTH or RVC 40%(제4조)’ 또는 ‘PSR(제5조)’를 적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제5조에 따른 PSR이 존재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은, 상품의 작업 또는 공정이 수행된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한·ASEAN FTA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PSR 해석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서만 PSR이 적용된다는 규정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제61류, 제62류에 존재하는 세번변경기준 적용과 함께 재단·봉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이를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는 관세청의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실무 목적상 자주 적용되는 상황이 아닐 것이다. 관련 규정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 각 협정별 해석도 필요하다. 관세청에서도 이런 경우 관련 FTA 협정문과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FTA 원산지 담당자나 관세사 또한 규정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수입 / 식물성장조절제의 수입요건

식물성장조절제를 수입할 때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관세율표에서 제3808호에 ‘살충제·살서제(취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3808.93호에 ‘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를, 제3808.93.3000호에 ‘식물성장조절제’를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호 해설서에서는 “식물성장조절제(plant growth regulator) : 식물성장의 촉진·지연·수확의 증대·질(質)의 개선·수확의 용이성 등을 위해서 식물의 생장 과정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808.93-3000호에 분류되는 식물 뿌리 발근제 등 식물성장조절제를 수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관장학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농약품목등록증 또는 농약수입허가증,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이 된 것이나 허가를 받은 농약 또는 원제만 수입할 수 있음

품목분류 / 폐분말 페인트의 HS Code

폐기물에 해당하는 폐분말페인트는 어느 호에 분류되나요?

문의하신 물품이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의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의 ‘기타’에 해당된다면 제3825.69-0000호에 분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3825호 해설서에서 “(4)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 : 이 그룹은 특히 잉크·염료·안료·페인트·래커와 바니시의 생산·배합과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생활폐기물과 폐

유기 용제(溶劑) 이외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수성(水性)이나 비수성(非水性) 매체의 용액이나 반(半)고체 상태의 분산물(dispersion)로부터 얻어지는 각양각색의 불균질한 혼합물이며, 다양한 점성을 나타낸다. 이들은 제시된 상태에서 본래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FTA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중국에서 제조한 메이크업 브러시 4종 세트를 총 50개 수입한다면, FTA 원산지증명서에 수량을 송장과 동일하게 ‘50 SETS’라고 표기해야 할지 4종씩 50개인 것을 고려해 ‘200 PIECE’로 표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한·중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제8란에는 ‘포장의 수량 및 종류, 품명’을 기재합니다.

작성 방법에 따르면, “포장의 수량 및 종류를 명시한다. 각 상품의 품명을 제공한다. 품명은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상품을 식별할 수 있고, 그 상품을 송장 품명 및 상품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상품이 포장되지 아니한 경우, ‘포장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8란 내용이 송장 등 입증서류와 동일해야 할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송장과 동일하게 50 SETS로 기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항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받기 바랍니다. 세관담당자는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청소개 > 조직 및 직원안내 > 직원안내 > 이름/주요업무로 찾기’로 확인 가능합니다.

수입 / 수입신고

수입물품 검역을 위해 견품을 채취했습니다. 검역 합격 후 수입신고 시 견품을 제외한 나머지 중량을 서류에 기입해도 될까요?

실무적으로 식품 검사, 검역 등을 위한 견품 채취 시 일반적으로 오차범위 내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역에 합격해 수입통관을 할 경우 전량 수입신고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견품으로 채취돼 사용·소비된 양이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은 「관세법」 제161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해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견본품 채취 외 남은 물량에 대해 수입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 전 가격신고로 발생한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 관련 판례

이 정 완 | 인천공항세관 심사정보과

I. 처분의 경위 및 사건 경과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이 사건 수출자와 사이에 이 사건 수출자로부터 2010. 3.까지 ○○○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2007. 1. 계약기간을 2016. 3.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수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나. 이 사건 수입계약은 전체 계약기간을 크게 2003. 4.부터 2009. 3.까지, 2009. 4.부터 2010. 10.까지, 2010. 4.부터 2016. 3.까지의 3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구간별로 각기 다른 기준(가격산정방식)으로 ○○○의 가격을 결정하기로 정했는데, 그 중 3번째 구간의 마지막 2년인 2014. 4.부터 2016. 3.까지 사이에 공급되는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가격에 대해서는 “당사자 일방이 2014. 3.부터 6개월 이전까지 2014. 4. 이후 공급되는 ○○○부터 적용되는 가격을 정하기 위하여 가격 재협상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은 그 가격 재협상에 참여해야 하고, 만약 당사자 쌍방이 가격 재협상이 적용되는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합의에 이를 때까지 직전 거래 기간에 적용되었던 가격산정방식이 잠정적으로 적용되며, 당사자 일방의 가격 재협상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 기간에 적용되었던 가격산정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입계약에서는 “당사자 쌍방 사이에 이 사건 수입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나 논란 등이 해결될 수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및 중재절차로 해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수출자는 2013.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가격 재협상 요구를 통지했고,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수출자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적용할 가격산정방식에 대한 협상이 진행됐으나, 이 사건 수입계약이 종료되는 2016. 3.까지도 그 가격 재협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수출자는 2017. 7. 원고를 상대로 국제중재절차의 개시를 통지했고, 이 사건 수출자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의 가격’에 관한 국제중재절차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위 국제중재절차에서 2020. 8.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가격에 관해 원고가 이 사건 수출자에게 이미 지급했던 직전 계약기간에 적용됐던 가격산정방식에 따른 가격(잠정가격) 외에 합계 미화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재판정이 이뤄짐으로써 이 사건 물품의 최종 가격이 확정됐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4.부터 2016. 3.까지 사이에 이 사건 수입계약에 따라 ○○○을 수입했는데, 이 사건 수출자와 사이에 가격 재협상이 완료되지 않아서 실제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전 계약기간인 2013. 4.부터 2014. 3.까지 적용됐던 가격산정방식에 따른 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했고, 이후 위 잠정가격 수입신고에 따른 확정가격 신고기한이 다가옴에도 위 국제중재절차의 진행 등으로 여전히 이 사건 물품의 최종 가격이 확정되지 않자 2015. 12.부터 2018. 1.까지 사이에 위 잠정가격 수입신고 시의 잠정가격을 이 사건 물품의 확정가격으로 해서 확정가격 신고를 했다.

연번	수입신고	확정신고	확정기한	연번	수입신고	확정신고	확정기한
1	2014. 4.	2015. 12.	2016. 4.	8	2016. 2.	2018. 1.	2018. 2.
2	2014. 7.	2015. 12.	2016. 7.	9	2014. 11.	2016. 11.	2016. 11.
3	2014. 7.	2015. 12.	2016. 7.	10	2015. 5.	2017. 1.	2017. 5.
4	2014. 10.	2015. 12.	2016. 9.	11	2015. 9.	2017. 3.	2017. 9.
5	2015. 2.	2016. 12.	2017. 2.	12	2015. 9.	2016. 6.	2016. 6.
6	2015. 6.	2016. 12.	2017. 6.	13	2016. 2.	2017. 6.	2017. 6.
7	2016. 1.	2018. 1.	2018. 1.	14	2016. 3.	2017. 6.	2017. 6.

마. 이후 원고는 위 2020. 8. 중재판정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수입과 관련해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수정신고·납부했다.

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물품의 수입과 관련해 신고·납부했던 가산세의 면제를 신청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했다.

2. 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해 202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2022. 1.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나. 원고는 2022. 4.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2023.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다. 원고는 제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2023. 5.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2. 이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은 2024. 7.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함으로써 항소심 판결 그대로 확정됐다¹⁾.

1) 수원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구합69958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누12817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두38834 판결

II.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최초 수입신고와 확정신고를 할 당시에 원고와 이 사건 수출자 사이에 가격 재협상과 그에 이은 국제중재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 물품의 최종 가격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 최종 가격을 예측하기도 어려웠다. 즉, 이 사건 물품에 관해서는 확정신고 시에 최종 가격을 알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했다.

그리고 원고는 “확정가격 신고의 기한까지 가격 재협상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떠한 가격으로 확정가격을 신고해야 하는지”라는 질의에 대해 관세청으로부터 “확정가격 신고기한까지 확정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어떠한 가격을 확정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은 없으므로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에 의해 계약서 등에 근거해 적정한 가격을 확정가격으로 신고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와 관련해 확정신고 시의 부족세액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항소심 추가 주장) 관세법령상 확정가격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납세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가격 자체를 의미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있었던 가격을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가격의 확정가격으로 신고했을 뿐이므로, 원고의 확정가격 신고에 의무의 해태가 없었다. 그리고 2020. 8. 중재판정은 이 사건 물품 가격을 소급해서 변경할 뿐이므로, 그 변경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만 하면 충분하고 원고의 기존 확정가격 신고가 사후적으로 허위로 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수정신고할 당시 2020. 8. 중재판정에서 결정한 이 사건 물품 가격을 안분하는 방법에서 세법상 의의(疑意)가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III.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관세법」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 ① 제3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 「관세법」 제42조(가산세)

-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관세법」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중략> ...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 ③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 ⑥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중략> ...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IV. 판결의 요지

1. 제1심 판결

제1심 법원은 가산세 부과·감면에 관한 법리를 먼저 살펴본 뒤 이 사건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춰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관한 확정신고시의 부족세액에 대해 이를 정당시킬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채 이 사건 수출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나. 원고는 당시 이 사건 물품에 관해 가격 재협상이나 국제중재절차에서 최종 가격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가격 신고기한의 연장이나 과세가격 결정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확정가격 신고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2015. 12.부터 2018. 1.까지 사이에 임의로 잠정가격을 그대로 확정가격으로 신고를 했다.

다. 반면 원고가 위와 같은 확정가격 신고 이전에 관세청이나 피고들에게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확정가격 신고에 관해 구체적인 문의나 질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라. 원고가 드는 관세청 질의회신은, 원고가 이미 위와 같은 확정가격 신고를 마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20. 10.에 사후적으로 관세청에 질의해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그 질의 회신에서도 “최종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세가격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계약서류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해 관세평가분류원에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수출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가격 재협상을 요구했으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가격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는 그 자체로 납세의무의 해태를 회피하고자 노력하는 성실한 납세자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 확정가격 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한편 원고는 “2020. 8. 중재 판정으로 이 사건 물품의 최종 가격이 결정된 점에 비춰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해 잠정가격으로 최초 수입신고를 한 때로부터 도래하는 확정가격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추가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을 받았더라도 그 연장기간 내에 이 사건 물품의 최종 가격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와 이 사건 수출자 사이의 이 사건 물품 가격에 관한 국제중재절차에서 2020. 8.에 중재 판정이 이뤄지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우연한 결과일 뿐이고, 그것이 이미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인 2015. 12.부터 2018. 1.까지 사이에 임의로 이뤄진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원고의 확정가격 신고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나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2. 항소심 판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가 확정가격을 제대로 신고했거나 중재판정금의 안분 방법에 관한 세법상 의의(疑意)가 있었다는 등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서 ‘확정가격’이란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서 정한 2년의 기간이 종료하기 직전까지도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잠정가격이 확정가격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잠정가격을 확정가격으로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수입과 관련해 신고한 잠정가격이 이 사건 물품의 구매자로서 판매자에게 “지

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서, 단지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른 2년의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가는 데도 이 사건 물품의 수입으로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연장의 요청을 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위와 같이 수입신고한 잠정가격을 확정가격, 즉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신고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부족세액이 발생해서 피고가 그 부족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징수했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확정가격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물품 가격에 관한 중재판정금을 안분하는 기준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내용과 상관없으므로, 그러한 기준의 존부 및 내용은 원고의 확정가격 신고의무 해태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V. 판례 해설

1. 이 사건의 쟁점 정리

이 사건 수입계약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가격 재협상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은 그 가격 재협상에 참여해야 하고, 만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합의에 이를 때까지 직전에 적용됐던 가격산정방식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며, 당사자 쌍방 사이에 분쟁 등이 해결될 수 없는 때에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및 중재절차로 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사건 수출자는 2013. 9.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가격 재협상을 요구했고, 원고는 2014. 4.부터 2016. 3.까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했는데 이 사건 수입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격 재협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7. 7. 이 사건 수출자와 원고 사이에 국제중재절차가 진행됐고, 중재판정 결과 2020. 8. 직전 계약기간에 적용됐던 가격 외에 추가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이 확정됐다.

한편, 원고는 2015. 12.부터 2018. 1.까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했던 잠정가격으로 확정가격 신고를 했는데, 그 시점을 국제중재 절차 개시 전후 기간의 흐름과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 이 사건 물품의 확정가격 신고 시점 ●

2013. 9.	2015. 12.	2016. 3	2016. 6 ~2017. 6	2017. 7.	2018. 1.	2020. 8.
재협상 요구	확정신고 (4건)	협상종료	확정신고 (8건)	국제중재절차 개시	확정신고 (2건)	중재판정

원고는 중재판정으로 인해 이 사건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이 확정가격으로 신고한 과세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결정돼 부족세액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① 확정가격 신고 당시에는 확정가격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 가격을 예측할 수 없었던 점, ② 관세청은 확정가격 신고기한까지 그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어떤 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계약서 등에 근거해 적정가격을 확정가격으로 신고 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③ 확정가격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납세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있었던 해당 가격이 확정가격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부족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할 사유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즉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가 성실신고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있다. 이하에서는 관세법령상 확정가격 신고기한까지 그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납세의무자는 어떤 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대상 판결의 정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2. 확정된 실제지급가격을 알 수 없는 때의 과세가격 신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과세표준은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며, 관세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물품을 제외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관세법」 제14조·제15조·제16조).

그리고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이 때에 해당 물품에 대한 가격신고와 납세신고를 함께 해야 한다(「관세법」 제27조·제38조·제241조).

또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이라 한다)”을 기초로 정해지는데, 앞에서 살펴본 관세의 과세표준,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관한 규정에 비춰 볼 때 이때의 실제지급가격은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해당하는 확정된 가격이어야 한다. 만약 수입신고를 할 때까지 실제지급가격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할 실제지급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이 경우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을 순차 적용해 결정된 과세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관세법」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최우선 원칙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관세평가 목적상 가능한 최대로 적용하기 위해 비록 수입신고 당시에는 확정된 가격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관세법」 제28조,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잠정가격 신고 대상 ●

1. 거래관행상 거래 성립 이후 가격이 정해지는 물품²⁾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가산금액이 수입신고일 이후 정해질 수 있음이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3.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4.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5.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³⁾으로 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위 규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해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등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유에 따라 2년의 범위 안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확정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이 사건 수입계약에는 당사자 일방이 가격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고, 가격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국제중재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수출자가 요구한 가격 재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 사건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을 확정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당시에는 확정된 실제지급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을 순차 적용해 과세가격을 신고해야 하지만, 「관세법」 제3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고자 한다면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뒤 가격이 확정된 시점에 그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면 된다.

그런데 국제중재절차가 상당 기간 소요됨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확정가격 신고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실제지급가격을 확정하지 못할 수 있다. 이때는 과세관청에 질의를 통해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할 수 있고, 「관세법」 제3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

2)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원유·곡물·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산품

3)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1. 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2.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3. 수입 후에 수입물품의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을 것
 -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될 것
 - 다.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할 것
4.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격을 신고하고자 한다면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⁴⁾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받은 뒤 이후 확정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면 된다.

만약 연장된 2차 확정가격 신고기한까지도 가격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할 수 밖에 없다⁵⁾.

3.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관세법」 제42조(가산세) 및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규정에 따르면 세관장은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를 징수함이 원칙이나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감면 사유는 다음 표에 기재된 것과 같다.

●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사유 ●

1. 수입신고 수리 전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
2.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 신고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
3.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내 그 결과대로 수정신고
4.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
5. 보정기간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 자진하여 수정신고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7.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가 지연된 경우
8. 부족세액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가산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면제 받으려는 금액과 정당한 사유 등을 기재한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 규정에 따라 위 표의 1 내지 6에 해당하는 가산세 감면 사유의 경우 가산세 감면부호를 기재해 납세신고를 정정신청하는 방법으로 간이하게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대상 판결에 기재되어 있는 않지만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물품 중 일부에 대해 감면 신청서 제출 없이 앞서 설명한 간이한 방법으로 감면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관세청의 민원 회신을 정당한 사유로 기재한 신청

4)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 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 영 제16조 제4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영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신고한 과세가격보다 이후 국제중재판정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이 더 높게 확정된 경우 제척기간이 남아 있다면 신의성실 의무를 부담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때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 받아 면제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들은 가산세 감면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정당한 사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없었다고 봐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

이후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주된 정당한 사유는 확정가격 신고 당시에 최종 가격을 알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잠정·확정가격 신고제도는 수입신고 당시에 확정된 실제지급가격이 존재하지 않지만 「관세법」 제3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고자 할 때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가격신고 절차에 해당할 뿐, 잠정가격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관세법」 제3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해야 한다거나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 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확정가격 신고 당시에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에 질의를 통해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거나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을 해 이후 가격의 확정 여부 등에 따라 「관세법」 제30조 또는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으로 신고하면 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최초에 신고했었던 잠정가격으로 가격이 확정된 것처럼 신고했는데, 신고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수출자와의 협상 진행 중이던 2015. 12에 2건, 협상 종료(2016. 3.) 후 국제중재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2016. 6.부터 2017. 6.까지 8건, 국제중재절차가 개시(2017. 7.)된 지 불과 6개월이 지난 2018. 1.에 2건의 확정가격 신고를 했으며, 이 신고의 대부분은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수개월 전에 미리 이뤄졌다.

대법원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와 관련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을 판시⁶⁾하고 있는데, 원고가 확정가격 신고 당시에 최종 가격을 알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도래하기도 전에 과세관청에 그 어떠한 질의도 없이 확정되지 않은 가격을 만연히 확정가격으로 허위 신고했고 이는 성실신고 의무를 해태한 중대한 귀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원고는 확정가격 신고기한까지 그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계약서 등에 근거해 적정가격을 확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관세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6)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89 판결 등

이와 관련해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해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 전에 과세관청에 그 어떠한 질의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관세청 질의회신은 확정가격 신고를 하기 전에 한 질의가 아니라 사후에 관세청에 질의해 답변을 받은 것이며, 이 또한 계약서류 등의 구체적인 자료 없이 원고의 설명에 기초한 단순 민원 회신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와는 관련이 없다.

끝으로 ‘확정’의 사전적 의미에 비춰 볼 때 확정가격이란 확실하게 정해진 가격이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서 ‘확정가격’이란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으로서 당사자간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확정가격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납세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는 추가 주장도 자의적이어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현재 관세행정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서 마련해 두고 있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과세가격 등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미리 과세관청에 질의하고 그 결과를 수용해 신고하고 있는 추세다. 이 사건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당사자 간 가격 협상과 국제중재절차가 있었고 그로 인해 당초 잠정가격으로 확정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는 과세관청에 아무런 질의도 없이 잠정가격을 확정가격으로 신고해 결과적으로 부속세액이 발생했다. 원고의 이러한 신고 행위는 명백한 신의성실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대상 판결은 정당하다.

원자시계 관련 제품의 품목분류 - WCO HS위원회 결정 -

김진용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3과

I. 머릿말

항공기와 관제탑이 서로 시간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 비행기의 이착륙 자체가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과 열차, 항공기 등 전 세계 모두가 똑같은 시간을 사용한다. 이 시간이 ‘표준시’다.

표준시는 시간의 최소 단위인 초를 국제표준으로 정한 것인데 1967년부터 다른 물질보다 진동수가 일정한 세슘 원소의 진동수(91억 9,263만 1,770번)를 1초로 정의했다. 美 항공우주국(NASA) GPS 위성의 세슘 원자시계¹⁾는 3,000만 년에 1초, 중국이 작년에 개발한 루비듐 원자시계는 10억 년에 1초 정도의 오차가 생긴다.

일상에서 1초 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기록을 집계하는 올림픽 등 스포츠 경기, 휴대폰과 신호를 주고받는 기지국, 초 단위로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금융권, 정밀 기계를 작동하는 공장 등에서는 아주 정확한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도 NASA GPS 위성의 세슘 원자시계가 보내주는 3,000만 년에 1초의 정밀한 시간을 실시간으로 받고 있다.

● 美 항공우주국이 발명한 원자시계 ●



출처 : NASA

1) 세슘 원자시계 : 원자시계(原子時計)는 원자의 진동수가 일정함을 이용해 만든 시계다. 온도 등의 외부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정확도가 매우 높다. 암모니아, 루비듐, 수소 등이 사용되나, 그 중 국제원자시의 기준이 되는 세슘 원자로 만든 시계가 특히 정확성이 높다. 보도(歩道, 1일 간에 늦어지거나 빨라지는 양)는 0.0000001초다(출처 :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한편, 세슘 원자시계는 통신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시 우수하고 신뢰성 높은 주파수 기준을 생성할 수 있도록 PRS(Primary Reference Source, 동기클럭원)²⁾으로 간주되며, 음성 및 데이터 전송 서비스 제공 시 네트워크 주파수를 동기화하기 위해 통신 네트워크 및 기타 응용 프로그램에서 주파수 기준으로 사용한다. 즉 세슘 원자시계는 통신 네트워크 등에서 기기 간의 동기화를 위한 주파수 기준인 클럭(clock)으로 사용된다.

● 세슘 원자시계 ●



출처 : 위키피디아 사전



출처 :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디지털아카이브

2) PRS 및 PRC(Primary Reference Clock) : 전체 네트워크 동기의 최상위 기준이 되는 동기 클럭 기준원/발생원(마스터 클럭), 예 : KRF(한국기준주파수), GPS, Loran-C, 표준주파수 방송국 등(출처 : 정보통신기술용어해설)

이와 같이 세습 원자시계는 HS 품목분류상 시간을 제공하는 기기로서 시계로 볼 수도 있고, 네트워크 장비의 클럭을 제공하는 전기기기로 볼 수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WCO HS위원회에서 논의됐던 특정 세습 원자시계의 품목분류 결정사항과 함께 국내외 품목분류 결정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분석한다.

II. WCO HS위원회 결정사항(세습 원자시계)

■ 물품 설명

통신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시 우수하고 신뢰성 높은 G.811 주파수 기준을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세습 원자시계.

동기화 신호는 음성 및 데이터 전송 서비스 제공 시 고정 및 모바일 네트워크 주파수를 동기화 하기 위해 통신 네트워크 및 기타 응용 프로그램에서 주파수 기준으로 사용함.

■ 논의 사항

다양한 국가에서 쟁점 세번인 제8517호(통신기기), 제8543.20호(신호발생기), 제8543.70호(기타 전기기기) 및 제9105호(기타 시계)를 도출했다. 각 쟁점별 논지는 다음과 같다.

○ 제8517호

쟁점물품은 통신 네트워크의 기본 장치이며 네트워크의 정확한 작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작동하는 동안 동기화 신호를 보조 장치로 보내며, 이는 제8517호 통신기기에서 다루는 기능이다.

○ 제8543.20호

쟁점물품의 필수 기능은 매우 안정적인 클럭 신호를 생성하는 것이지 제9015호 해설서에서 설명한 ‘시간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쟁점물품은 시계가 아니라 클럭 신호를 생성하는 장치로 볼 수 있어 ‘기타 시계’인 제9105호에 분류될 수 없다.

해당 신호는 모든 디지털 회로에서 기능을 수행할 시기와 방법을 아는 데 사용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제8543호에 분류된다.

HS 소호와 관련해 쟁점물품은 정확하고 높은 주파수 신호를 생성하기 때문에 제8543.20호의 신호발생기로 볼 수 있다.

■ 제8543호 해설서

- (2)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 :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 주파수(예 : 고주파나 저주파)인 전기적 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다. 이 기기에는 특히 임펄스발생기·패턴발생기·웜볼레이터(wobbulator : 스윙발생기)를 포함한다.

○ 제8543.70호

제8543호에 분류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으며, HS 6단위 소호 관련으로 쟁점물품은 제8543호 해설서에 따라 임펄스발생기, 패턴발생기 등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 주파수인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 내는 신호발생기(제8543.20호)가 아니고, 특정 주파수를 만들어 내는 기능을 하므로 ‘기타의 전기기기’인 제8543.70호가 더 적합하다.

○ 제9015호

쟁점물품은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에서 보조 시계를 정확한 방식으로 동기화하는 역할을 하는 주(主) 시계(master clock)로서 제9105호 해설서에 예시돼 있으며, 전기통신 분야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원자시계라는 것이 확인된다.

쟁점물품은 ‘시계 또는 이와 유사한 시계’로서 제9105호의 용어에 포함된다.

■ 제9105호의 용어

그 밖의 클록(clock)

■ 제9105호 해설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시각을 지시(indicating the time of day)하기 위하여 제작된 클록(clock)을 분류하며** ; 따라서 이러한 시계는 반드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이외의 무브먼트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 논의 결과

다양한 국가에서 의견을 교환한 후 HS위원회에서는 투표를 통해 제8543.20호로 품목번호를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HS 품목분류의견서를 개정해 다음과 같이 수용했다.

8543.20 1. 세습 원자 시계

자동 주요 표준 시계로 간주되며, 통신 네트워크 운영자가 10^{-12} 의 주파수 안전성을 갖는 G.811 동기화 신호를 생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III. 국내외 품목분류 결정사항(제8543.20호)

[국내 사례] 제8543.20호의 신호발생기로 분류된 국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579
시행일자	2006년 2월 17일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8543.20-0000호
품명	Function Generator ; 33250A(함수발생기)
물품 설명	○ 기능 및 용도 - 기능 : 사용자가 원하는 임의 파형 및 펄스의 주파수 발생 - 용도 : Chip이 제대로 동작되는지 여부 측정 시, 측정하고자 하는 Chip 특성에 맞는 주파수 입력, 공급 - 동작 원리 : 테스트하고자 하는 물품에 케이블 연결 '본품 앞면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 사용자가 각각의 물품 특성에 맞는 주파수(최소 1uHz ~ 최대 80MHz) 설정' 설정된 데이터에 맞춰 발생된 주파수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품으로 전송.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제8543.20소호는 '신호발생기'를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신호발생기 : ... 신호를 지정주파수인 전기적 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에서는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를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Chip의 정상적인 동작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Chip의 특성에 맞는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전기기기로서 제85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기계로부터 별개로 작용될 수 있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 및 호 해설서 규정에 의거해 ‘신호발생기(제8543.20-0000호)’에 분류됨.

[해외 사례] 제8543.20호의 신호발생기로 분류된 해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기준년도	2008년
참조번호	DEM/1867/08-1 독일
시행일자	2008년 4월 30일
결정 세번	제8543.20.0000호
물품 설명	Test signal generator (테스트 신호 발생기) - from one equipped with active and passive electronic components and printed circuit panel with a synchronous signal input and four video outputs - for generating digital video signals for testing after installation in a modular system. “Electrical apparatu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Chapter 85 - Signal Generator”
분류 사유	AV 1 AV 6 Anm 2 a) ABS XVI ErlKN Pos 8543 (HS) RZ 04.0 ErlKN Pos 8543 (HS) RZ 11.0
이슈 장소	MÜNCHEN
키워드	SIGNAL GENERATORS,ELECTRIC,
기준년도	2010년
참조번호	GB500810111 영국
시행일자	2010년 9월 20일
결정 세번	제8543.20.0000호
물품 설명	THE PRODUCT IS A 100W, 2.45 GHz MICROWAVE GENERATOR AND AMPLIFIER. IT IS TO BE USED IN THE FIELDS OF MICROWAVE TEST AND MEASUREMENT, MICROWAVE CHEMISTRY, MANUFACTURING AND IN FOOD SCIENCE(마이크로웨이브 테스트와 측정, 전자파 화학, 제조, 식품과학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THE PRODUCT UTILISES SOLID-STATE TECHNOLOGY.
분류 사유	THIS MICROWAVE GENERATOR AND AMPLIFIER IS CLASSIFIED TO COMMODITY CODE 8543200000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 GENERAL INTERPRETATIVE

RULES (GIRs) GIR1 HAS BEEN USED TO CLASSIFY THIS PRODUCT BY THE TERMS OF HEADING 8543. GIR 6 HAS BEEN USED TO CLASSIFY THE GOODS TO SUBHEADING LEVEL.

이슈 장소 Southend

키워드 ELECTRICAL APPARATUS,SIGNAL GENERATOR,MICROWAVES,AMPLIFIERS,FOR SIGNALS

IV. 결정사항 분석

■ 분석 사항 도출

WCO 결정사례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제8543.20호의 신호발생기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결정사항 분석 및 시사점

○ HS 2단위 간 쟁점(전기기기 VS 시계)

쟁점물품은 제16부 주 제1호 파목에 따라 제9105호(그밖의 클록)에 우선 분류된다. 따라서 제9105호의 기타 시계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제16부 주 제1호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중략> ...

파. 제91류의 시계와 그 밖의 물품

WCO HS위원회에서 다수의 대표단은 제9105호(그 밖의 클록)에 우선 분류되는지 검토해 봤는데, 쟁점물품은 제9105호 해설서와 같이 시각(the time of the day)을 지시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은 아니며, 시간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9105호에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 제9105호 해설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시각을 지시(indicating the time of day)하기 위하여 제작된 클록(clock)을 분류하며** ; 따라서 이러한 시계는 반드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이외의 무브먼트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또한 정점물품은 매우 안정적인 클럭 신호를 생성해 두 시스템을 동기화해야 하는 모든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정점물품이 전기 신호만 생성하는 전기 장치라는 이유로 제8543호(신호발생기)로 분류했다.

즉, 이번 HS위원회 건은 HS 2단위 정점으로서, 제85류의 전기기기인지 아니면 제91류의 시계인지 해당 여부가 정점이었으며, 전기적 신호 발생 부분까지만 제시된다면 제85류의 전기기에 해당되고, 전기적 신호 발생과 함께 시각(the time of the day)을 지시하기 위해 고안된 물품인 경우 제91류의 시계로 볼 수 있다.

관세율표에서 제85류의 전기기기는 제90류의 광학기기, 제91류의 시계 분야 등 여러 물품과 경계가 모호하지만, 통상적으로 HS 제85류 총설에서 말하는 특성을 가진 경우 제85류의 전기기로 본다. 따라서 정점물품은 전기적 특성이나 효과에 의해 작동하는 기기로서 제8543호에 분류될 수 있다.

■ 제85류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한다.

- (1) 전기의 발생·변환·저장에 사용하는 기기[예 : 발전기·변압기 등(제8501호부터 제8504호까지)]와 일차전지(제8506호)와 축전지(제8507호)
- (2) 특정의 가정용 기기(제8509호)와 면도기·이발기와 모발제거기(제8510호)
- (3)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 전자적인 효과·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 제8511호부터 제8518호까지, 제8525호부터 제8531호까지와 제8543호)
- (4) 녹음·음성재생용 기기 ; 영상기록기·재생기 ; 부분품과 부속품(제8519호부터 제8522호까지)
- (5)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유사 기록물용 기록매체(비디오녹화 매체를 포함하되, 제37류의 사진촬영용이나 영화촬영용 필름을 제외한다)(제8523호)
- (6)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제8524호)
- (7)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나 전기기기 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예 : 축전기(capacitor)(제8532호)·개폐기(switch)·퓨즈(fuse)·접속함 등(제8535호나 제8536호)·램프(제8539호)·열전자관 등(제8540호)·다이오드(diode)·트랜지스터(transistor)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제8541호)·전기용 탄소(제8545호)]
- (8) 전도성이나 전기절연성을 이용하여 전기기기에 사용하는 종류의 제품과 재료[예 : 전기절연선과 그 조립품(제8544호), 애자(제8546호), 전기절연용품·절연재료로 속을 댄 금속으로 만든 도관(제8547호)]

○ 제8543.20호의 신호발생기 개념

정점물품은 매우 안정적인 클럭 신호를 생성해 두 시스템을 동기화해야 하는 모든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고 전기 신호만 생성하는 전기 장치라는 이유로 HSC에서 제8543호로 분류했다.

사전적인 의미의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는 앞서 언급한 국내외 분류사례와 같이 보통 전기기기의 테스트 또는 수리 시 필요한 신호를 생성하는 기기로 설명하고 있다.

● 위키피디아 사전 (발췌) ●

A signal generator is one of a class of electronic devices that generates electrical signals with set properties of amplitude, frequency, and wave shape. These generated signals are used as a stimulus for electronic measurements, typically used in designing, testing, troubleshooting, and repairing electronic or electroacoustic devices, though it often has artistic uses as well (신호발생기는 진폭, 주파수, 파형과 같은 설정된 속성을 가진 전기적 신호를 발생하는 전자기기 종류 중 하나다. 생성된 신호는 전기 또는 전자기기를 설계, 테스트, 문제 해결, 수리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전자적 측정용 자극으로 사용되며, 때때로 예술적 용도로도 사용한다).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signal generators with different purposes and applications and at varying levels of expense. These types include function generators, RF and microwave signal generators, pitch generators, arbitrary waveform generators, digital pattern generators, and frequency generators. In general, no device is suitable for all possible applications.

A signal generator may be as simple as an oscillator with calibrated frequency and amplitude. More general-purpose signal generators allow control of all the characteristics of a signal. Modern general-purpose signal generators will have a microprocessor control and may also permit control from a personal computer. Signal generators may be free-standing self-contained instruments, or may be incorporated into more complex automatic test systems.



이번 HS위원회의 원자시계는 클럭 신호를 생성하는 기기로서 사전상 신호발생기의 개념과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제8543.20호의 신호발생기 쟁점은 그간 WCO 차원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논의된 것으로 의의가 있다.

또한, 쟁점 원자시계의 WCO 품목분류 결정으로 신호발생기의 용도를 사전적 의미상의 '테스트 및 수리용 신호 발생' 외에 좀 더 넓혀 '무선 통신기기 간 동기화 신호 생성'이라는 용도를 추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V. 맺음말

이번 호에서는 세습 원자시계의 기능·용도, 관련 제품의 WCO 및 국내 품목분류 결정사례 및 시사점 등을 살펴보았다. 이번 기회에 원자시계의 품목분류를 심도있게 이해해 수출입 업무에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울러 무선 통신기기 등 전기기기 작동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동기화 신호 생성 기기에 대해 이번 기고 내용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수출입 화주, 관세청, 유관기관 등의 고견을 기대한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워딩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고려시대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몰래 가져와 재배한 것으로 유명한 목화. 이것을 풀어헤쳐 빗질하는 카딩 공정을 거쳐 실을 만들어 직물을 짜면 면직물이 된다.

우리가 흔히 솜이라고 이야기하는 탈지면은 직물과는 다르게 제조된다. 간단히 ‘카딩(웹) 제조 → 적층(웹을 여러 겹 적층) → 프레스 → 탈지·표백 → 절단 → 출하’의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데, 면뿐만 아니라 기타 합성섬유로도 제작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물품을 관세율표상 ‘워딩’으로 분류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백색의 시트를 롤상으로 감은 것으로 ‘탈지면’인 제3005.90-1000호로 신고했다.

제3005호에는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을 분류한다.

호 해설서에서는 “피복용의 탈지면과 거즈(보통 탈지된 면제의 것)와 붕대 등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나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개인·전문병원(clinics)·병원(hospitals) 등에 직접 소매판매하기 위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되어 있고, 전적으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과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들의 특성(롤 모양이나 접힌 상태로 제시, 보호포장 및 라벨링 등)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물품은 벌크 형태의 롤상으로 재포장 없이 소매판매하기에 적합한 형태의 물품으로 볼 수 없어 제3005호에서 제외됐다.

제5601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를 분류한다.

호 해설서에서 ‘워딩’과 그 밖의 제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워딩(wadding)은 카드(card)하거나 에어레이드(air-laid)한 **섬유층을 여러 층으로 겹쳐서 만들고** 섬유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압축되어** 있다. 워딩(wadding)은 때때로 섬유의 결합력

1) 단섬유 및 필라멘트를 이용한 섬유집합체의 얇은 시트

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는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 직물류로 만든 물품으로 받쳐서 워딩층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가볍게 두들긴다. 워딩(wadding)은 탄력성이 있고 스펀지 모양의 높게 부풀은 시트(sheet) 모양이며 두께가 균일하고 섬유는 쉽게 분리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언급돼 있다.

본 물품은 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해 만든 웹을 여러 겹 겹쳐서 압축한 형태로 최소 6겹 이상의 웹으로 분리되는 특징이 있어 제5601호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워딩에 부합했다.

따라서 본 물품은 카딩한 면을 여러 겹으로 적층한 워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1.21-0000호에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WADDINGS	3005.90-1000 (C 0%)	Cotton wadding	5601.21-0000 (A 8%)

지구 온난화 주범으로 지목된 냉매 ‘프레온가스’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관세사)

냉매(冷媒, Refrigerants)란 열교환기에서 열을 빼앗기 위해 사용되는 전열 물질, 작동유체를 말한다. 냉동·냉장창고에 들어가는 냉각기와 배송 차량에 부착되는 냉각기, 업소와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어컨과 냉장고, 마트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케이스와 같은 다양한 설비에 활용된다.

이러한 냉매는 처음 개발됐을 당시에는 효율성이 우수하다는 평가와 함께 널리 쓰였지만, 이후 진행된 연구에서 환경에 대한 중대한 유해성이 입증됐다.

이에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고 1985년 국제연합(UN)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을 추진, 1987년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했다. 의정서는 비엔나 협약을 보완하며, 오존층 파괴물질을 감축하고 대체물질 개발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여러 차례 회의와 협약을 통해 관련 내용이 개정되거나 신설되며 가장 최근인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서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코펜하겐 개정안이 나온 1992년 협정에 가입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1993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도 참여하게 됐다.

오늘날에는 친환경 냉매라 해서 오존층 파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새로운 냉매가 개발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냉매들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요즘 이상기후로 가정용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면서 실외기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에어컨 화재의 대부분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냉매가 충전된 에어컨의 경우 화재가 더 발생할 수 있어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관세율표에서 소위 ‘프레온가스’로 통칭되는 불화염화 탄화수소 중에서 조제되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제2903호 ‘탄화수소의 할로젠화 유도체’에 분류된다.

예전에 주로 사용됐으나 독성 문제를 이유로 이제는 대형 냉동창고 등에서 활용되는 냉매 암모니아는 제2814호 ‘무수(無水)암수모니아와 암모니아수’에 분류된다.

단 조제된 프레온가스, 즉 불화염화 탄화수소는 현재 제3827호 ‘따로 분류되지 않은 메탄·에탄·프로판의 할로젠화 유도체를 함유한 혼합물’에 분류된다.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 ① 논문 원고
- ② 논문투고 신청서
- ③ 연구 윤리 확인서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문의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01호_2024.10.7.

최신개정법령

공고

-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본 내용은 www.custracom.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고

■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무역위원회공고 제2024-17, 2024.10.4.)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 가. 신청인 : 현대제철 주식회사
- 나. 신청일자 : 2024년 7월 31일

2. 재심사의 주요사항

- 가. 조사대상물품
 - 품명 :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제품(Hot-rolled carbon or other alloy steel plate)
 - 조사범위 : 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 이중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며, 코일모양이 아니며, 냉간 압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함
 - 관세품목분류 : HSK 7208.51.1000, 7208.51.9000, 7208.52.1000, 7208.52.9000, 7225.40.9010, 7225.40.9091, 7225.40.9099
 -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고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 조사대상공급자 : (중국) Shagang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 Howa Trading Co. Ltd., Xisc Singapore Pte. Ltd., Xiamen ITG AI Cloud Solutionas Co. Ltd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 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인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2021년 1월 1일 ~ 2024년 6월 30일

-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항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월의 범위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 기간은 추가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 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와,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 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 관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 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됨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전화	044-203-5866	044-203-5877
- FAX	044-203-4815	044-203-4813

*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 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조사 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내 무역구제 > 무역구제 조사진행 > 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신규 발간도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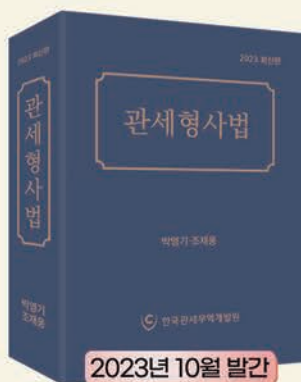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2024년 신간)

FTA 및 WTO 등 관련 세율과 통합공고 및 기타 고시 등
수출입 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단 한 권에!

10% ~~120,000원~~ **온라인 구매 108,000원**



2024년 1월 발간



2023년 10월 발간

관세형사법(2023년 개정판)

정확한 법집행과 적법절차 준수를 향한 지침서

관세/무역/외환형사분야의 복잡한 법리와 실무 정립,
중요 판례와 조사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

10% ~~60,000원~~ **온라인 구매 5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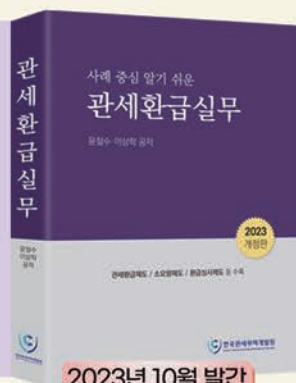
관세환급실무(2023년 개정판)

물품의 신속통관과 관세환급제도의 중요성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개정 서식 반영 및 사례와 그림으로 엮어 바로 실무에 활용

10% ~~50,000원~~ **온라인 구매 45,000원**



2023년 10월 발간

※ 상기 도서의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발간 예정 도서 사전 예약 할인!

**Special
price!**

구매 문의 02)3416-5112 **온라인 구매** smartstore.naver.com/kctdi

2024 (개정판) 관세법령집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관세 행정 업무는 이 한권으로!



발간기념
10% 할인

60,000 원 ➡ 54,000 원

1

최신 기준 반영

관세/무역 관련 법령
2024년 4월 1일 기준
수록

2

변경 법령 반영

새로 제정된 덤핑/상계관세
세부운영규정 고시 반영
24년 관련법 개정이유
수록

3

쉽고 편한 법령 참조

관세법 등 최신 판례 및
고시명 업데이트
(판례 8개, 고시명 66개 등
총 74개 변경)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커스트라 : www.custra.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